

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(제50조제4항 관련)

| 대상공사<br>구분      | 공사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·검사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실<br>규모 | 건설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급 품질관리<br>대상공사 |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,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|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·검사장비 | 50㎡ 이상    | 가.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<br>나.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<br>다.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   |
| 고급 품질관리<br>대상공사 |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·검사장비 | 50㎡ 이상    | 가.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<br>나.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<br>다.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|
| 중급 품질관리<br>대상공사 |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|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·검사장비 | 20㎡ 이상    | 가.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<br>나.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급 품질관리<br>대상공사 |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·검사장비 | 20㎡ 이상    |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1.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,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.

2.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·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·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.